

# (주)빙그레 도농공장 HACCP 적용 사례

## 우유부문

### 1. (주)빙그레 HACCP 적용 목적

식품의 안전성 및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HACCP운영을 전사(全社)적,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HACCP 운영

### 2. HACCP 적용 범위

- 도농공장 : 우유류
- 김해공장 : 발효유류
- 광주공장 : 우유류
- 논산공장 : 우유류

### 3. HACCP 적용 제품 보관 및 운반관리 기준(자재(포장재 포함)관리 중심 요약)

- 원자재 : 원유(原乳) 위생관리
- 부자재(우유팩, 플라스틱제품 등) 관리 및 운반
- 우유업체에서의 자재는 (원자재: 원유(原乳) 부자재: 포장재, 기타)로 구분한다.

#### 3-1. 목적

자재,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입고, 보관, 출고 관리에 대한 업무절차를 규정하여 자재 및 제품

의 처리과정에서 유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고객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제품을 제조 공급하는데 있다.

#### 3-2. 적용범위

기준서는 (주)빙그레 도농공장의 자재 입고로부터, 보관, 사용 및 제품(반제품)의 생산, 운반, 보관, 출하 전 과정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3-3. 용어의 정의

##### 1) 자재

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료로서 가식부위는 원자재(원유), 비가식부위는 부자재(포장재 포함)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##### 2) 제품

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는 포장이 완료된 물건이며, 포장되지 않은 개개 및 BULK 단위의 NIX는 반제품으로 구분 관리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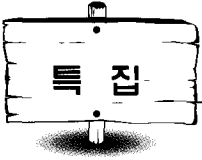
##### 3) 검사

검수대상품목을 자재 및 제품규격기준에 의거 사용 가부(可否)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# 4) 입고

검사에 합격한 원부자재 및 제품을 보관창고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# 5) 출고



제품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생산 현장(제조실)으로 이송 및 판매를 위하여 제품을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.

#### 6) 부적합품

자재 및 제품규격과 상이한 품질특성을 갖고 있는 자재 및 제품을 말한다.

#### 7) 폐기

공정검사 및 최종검사 결과 결함정도가 중결함 이상으로 재작업을 실시하여도 품질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.

### 3-4. 업무분장

#### 3-4-1. 품질관리팀

1) 자재(포장재 포함) 및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, 부적합품에 대하여 의도와 달리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책임이 있다.

2) 부적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관련부서와 처리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며, 원인을 파악할 책임이 있다.

3) 고객반송품에 대하여는 입고시마다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을 위하여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며 원칙적으로 폐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한다.

#### 3-4-2. 자재과

1) 자재(포장재 포함)의 입출고 및 창고관리를 하여야 한다.

2) 자재(포장재 포함) 보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보관품의 이상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.

3) 부적합품 발생시 “부적합품”라벨 등으로

격리보관 및 출고금지의 관리 책임이 있다.

4) 자재 선입선출 및 보관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.

#### 3-4-3. 물류팀

1) 제품의 입출고 및 창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2) 제품품질보존을 위한 냉장시설의 온도 유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3) 부적합품의 관리 및 제품 보관의 적정성 확보를 통한 제품의 이상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.

4) 출고 제품의 품명, 규격, 수량,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출고업무를 하여야 한다.

#### 3-4-4. 수송팀

1) 해당지점으로부터 주문입력이 완료되어 상차된 제품을 해당 지점 및 거대처에 제품을 완전하게 이송할 책임이 있다.

2) 제품 이송시 품질보증을 위한 차량의 적정 온도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이 있다.

#### 3-4-5. 생산과

1) 생산사용을 위한 출고자재의 관리 및 보관의 책임이 있다.

2) 부적합품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책임이 있다.

3)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로 부적합품에 대한 품질관리팀과 협의하여 재작업을 실시하며, 폐기되어야 할 경우에는 폐기처리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.

### 3-5. 관리기준

#### 3-5-1. 원부자재의 관리

##### 1) 원 부자재 흐름도

검수(품질관리팀)→보관창고 입고(자재과)→  
보관 및 출고(자재과)→제품제조 사용(생산과)

##### 2) 자재(포장재 포함) 관리사항

-자재과의 담당자는 발주자 도착하면 거래명  
세표상의 품명과 수량을 확인하고 품질관리팀의  
검사담당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.

-자재과의 검사의뢰에 의하여 검사담당자는  
원자재(원유)의 경우 “원료첨가물 및 식품공전  
또는 자체규격기준”, 부자재(포장재 포함)는  
“자체규격기준”에 의거하여 검사한다.

-품질관리팀으로 검사에 합격 통보된 자재는  
즉시 납품업체에 반품조치하며, 즉시 반품이 불  
가능한 경우에는 부적합품의 처리기준에 따라 처  
리한다.

-자재과는 자재(포장재 포함) 품질에 손상이  
가지 않도록 취급 및 운반시 적절한 운반도구를  
사용하며 파렛트 위에 적재하며, 중량품일 경우  
지게차 또는 호이스트 등을 사용한다.

-구입품 도착시 자재(포장재 포함) 담당자는  
출고지시서에 품명, 수량, 날짜 등을 기록한다.

#### 3-5-2. 자재의 보관

1) 검사에 합격한 자재(포장재 포함)는 지정  
된 보관장소에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 
적재하여야 하고 온도조건 등에 따라 별도관리  
를 요구하는 각 자재별로 아래와 같이 규정된 창  
고에 보관조치 하여야 한다.

2) 자재과 담당자는 자재창고 및 지정된 보관  
장소의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관상태를 점

검, 유지관리하며, 보관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  
우 즉시 품질관리팀에 내용을 통보하고 품질검  
사를 의뢰한다. 품질관리팀으로부터 통보받은  
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“부적합품” 식별표시를  
하며, 폐기 및 납품업체에 반송해야 한다.

##### 3) 자재(포장재 포함) 보관시 세부 사항

- 각 자재별 보관방법은 자재(포장재 포함)의  
포장에 표기된 보관방법을 준수하며, 보관방법  
이 자재의 포장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식  
품공전에 준하여 보관한다. 식품공전에 보관방  
법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(포장재 포함)는  
각 품목별 신고내용에 따른다.

- 적재시 직접 바닥에 닿지 않도록 파렛트 위  
에 적재하며 벽에서 10cm 떨어뜨려 보관한다.

- 보관중 주기적으로 보관창고에 대한 청소를  
실시하고 구서/구충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3-5-3. 자재(포장재 포함)의 출고 및 운반

1) 자재과는 생산과의 요청에 따라 자재를 선  
입선출에 의거 출고한다.

2) 자재 출고시 중량품일 경우 파렛트 위에 적  
재하여 지게차나 바퀴가 설치된 운반기구를 이  
용하여 운반한다.

3) 운반기구는 이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는 세  
척제를 이용하여 물세척을 해야 하며 세척후 필  
요시 소독을 수행한다.

4) 운반을 위해 운반기구나 파렛트에 적재시  
만지거나 충격을 가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, 필  
요시 천막등으로 감싸 오염을 방지한다.

5) 지게차나 운반기구의 운행시에는 시행하여  
야 하며, 흔들림이나 충격으로부터 운반품을 보  
호해야 한다. ☞